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36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채현일 · 정준호 · 차지호
문진석 · 이성윤 · 노종면
진선미 · 서미화 · 한민수
양부남 · 신정훈 · 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실시되며, 재외선거권자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선거인이 많음에 따라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제1항·제2항, 제218조의4제2

항, 제218조의5제2항, 제218조의8제2항 신설,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재외투표”를 “재외투표(재외거소투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3. 재외거소투표관리

4.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제218조의4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외거소투표 여부와 그 사유

제218조의5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외거소투표 여부와 그 사유

제218조의8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외선거인명부”를 “재외선거인명부(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5제2항제6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18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구·시·군의 장은 제218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외투표”를 “재외투표(재외거소투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재외거소투표자(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제218조의18제4항 후단 중 “제218조의16제1항”을 “제218조의16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투표용지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같은 항에 따라 작성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선거일 전 14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재외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여부,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였거나 투표용지가 반송된 재외거소투표자의 명단 작성 및 통지, 투표용지의 발송·회송 방법 및 우편요금 부담과 거소투표 안내문 발송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 본다.

제218조의19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외거소투표자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송부받은 재외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지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1제1항 본문 중 “투표함”을 “투표함(제218조의19제4항 후단에 따른 우편투표함을 포함한다. 이하 제218조의22에서 같다)”로 한다.

제218조의2제3항 중 “그 밖에”를 “재외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재외거소투표의 접수, 그 밖에”로 한다.

제218조의25제1항 전단 중 “제4항제7호·제10호”를 “제4항제10호”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2호 중 “거소투표자”를 각각 “거소투표자·재외거소투표자”로, “거소투표에”를 “거소투표·재외거소투표에”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2호가목 중 “제218조의9제3항”을 “제218조의9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제218조의5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만료일이 도래하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u>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국외부재자투표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괄 관리</u> 5. (생략)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u>재외거소투표관리</u>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u> 5. <u>재외투표(재외거소투표를 포함한다)</u> ----- ----- -----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생략)

②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생략)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6. 재외거소투표 여부와 그 사유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재외거소투표 여부와 그 사유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5제2항제6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① (생략)
<신설>

② 거짓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

③ -----

---재외선거인명부(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시·군의 장은 제218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

-----국외부재자신

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제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고인명부(거소투표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

----- . 다만, 재외거
소투표자(재외거소투표선거인
명부 또는 거소투표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거소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표
를 할 수 있다.

재외투표(재외거소투표를 포함한다)-----

제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6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218조의16제1항 본문-----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투표용지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같은 항에 따라 작성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선거일 전 14일까지 배달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재외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여부,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

⑤ (생략)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① ~ ③ (생략)
<신설>

하였거나 투표용지가 반송된 재외거소투표자의 명단 작성 및 통지, 투표용지의 발송·회송 방법 및 우편요금 부담과 거소투표 안내문 발송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 본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외거소투표자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이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① · ② (생략)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록을 비치하고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그 밖에 재외선거 및 국외부재자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생략)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제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② · ③ (생략)

등의 작성·송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재외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재외거소투표의 접수,
그 밖에-----

-----.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
-----제4
항제10호-----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② · ③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략)

2. 選舉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제39조제8항(제218조의9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

1. (현행과 같음)

2. -----거소투표자·재외거소투표자-----거
소투표자·재외거소투표자-----
-----거소투표·재외거소투표
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가. -----제218조의9
제4항-----

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 반하여 選舉人名簿作成事 務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나. ~ 아. (생략) 3. · 4. (생략) ④ · ⑤ (생략)	----- ----- ----- ----- 나. ~ 아.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